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대상자인 대학 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과 단기복무부사관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부사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반납에 대한 내용을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장려금 반납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대상 중 1호부터 3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대학 4학년
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대학 3학년
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 장교 양성교육과정

② 시행령 제60조의33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1. 시행령 제60조의33제1호 및 4호에 따른 사람: 부사관 양성교육과정
2. 시행령 제60조의33제2호에 따른 학생: 대학 1학년
3. 시행령 제60조의33제3호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장교 지원”을 “장교 및 부사관 임용”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반납 연기·면제에 관한 재심사 청구는 1회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를 “신청서”로,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의견서를 포함하여 재심사를 위한 자료 일체를 2주 내에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군 장려금 재심사 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신청내용	학교 및 전공학과	
	지급받은 비용 명세	희망 연기기간
	재심사 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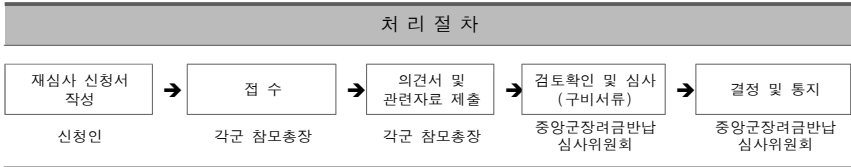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의3(재심사 청구)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전부 또는 일부)를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심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대상 중 1호부터 3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대학 4학년
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4년제 대학 3학년 때	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대학 3학년
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 장교 양성교육과정
	② 시행령 제60조의33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1. 시행령 제60조의33제1호 및 4호에 따른 사람 : 부사관 양성교육과정

현행	개정안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 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 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 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 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1. 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생략) 나. <u>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u> 다.·라. (생략)	2. 시행령 제60조의33제2호에 <u>따른 학생 : 대학 1학년</u> 3. 시행령 제60조의33제3호에 <u>따른 임기제부사관 : 복무기간</u> <u>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u> <u>3개월 이내</u>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① ---- ----- ----- ----- ----- ----- ----- ----- ----- -----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u>장교 및 부사관 임용</u> ---- 다.·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② ~ ⑥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재심사 청구) ① 제5조	제5조의3(재심사 청구) ① -----

현행	개정안
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연기·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령금 반납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u>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u>	----- ----- ----- ----- ----- <u>별지 제3호서식에</u> <u>따른 군 장령금 재심사 신청서</u> <u>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할</u> <u>수 있으며, 반납 연기·면제에 관</u> <u>한 재심사 청구는 1회에 한하</u> <u>다.</u>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u>청구</u> 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 <u>중앙군장령금반납심사위원회의</u>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 장령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② ----- -- <u>신청서</u> ----- <u>중앙군장령금반납심사위원회에</u> <u>의견서를 포함하여 재심사를 위</u> <u>한 자료 일체를 2주 내에 제출</u> <u>하고 그 심사결과</u> ----- <u>하여야 한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